

규약변경대비표

1. 펀드명 : 유경PSG액티브밸류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일자 : 2018.07.06(효력발생예정일)
3. 주요변경사항 : 환매수수료 조항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제41조(환매수수료)	제41조(환매수수료) 삭제
<p>제 41 조(환매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1. 종류 A 수익증권, 종류 A-e 수익증권, 종류 C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종류 C-F 수익증권, 종류 C-E 수익증권, 종류 C-w 수익증권, 종류 S 수익증권</p> <p>가.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p> <p>나.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p> <p>2. 종류 C-P1 수익증권, 종류 C-P2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종류 C-Pe 수익증권, 종류 C-Pe2: <u>없음</u></p> <p>규약변경</p> <p>3. 판매회사는 제 2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3 조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1 수익증권, 종류 S-P 수익증권 및 종류 C-P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p>	<p>제41조(환매수수료) 삭제</p>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07 월 06 일부터 시행한다.(환매수수료삭제)
	<신설>